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1-5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으로 동법 제2조제2의2가 신설되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상가 지역에 대하여 ‘골목형상점가’ 기준 설정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기준 마련 및 지원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제1조)
- 나. 골목형상점가의 요건(제2조)
- 다. 골목형상점가의 신청(제3조)
- 라.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(제4조)
- 마. 골목형상점가의 취소(제5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의2(골목형상점가의

정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

2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(상인조직의 정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상인조직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1. 3. 11. ~ 3. 31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6) 제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 5. 1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이하 “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
2.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

제3조(골목형상점가의 신청) ①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가 되려는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청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.

1.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2.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. 이 경우 동의한 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3.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
4.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

5.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(정관) 및 명부

6.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를 원활하게 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, 상권의 규모,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.

1. 명칭

2. 대표(관리)자

3. 소재지

④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확인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.

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4조(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)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 또는 상인조직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서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5조(골목형상점가의 취소)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

2.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
3.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.

1. 명칭
2. 대표(관리)자
3. 소재지
4. 취소 근거 및 사유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하민지(☎8582)